

<h1>보도자료</h1> <p>2021. 11. 8.</p>		<h2>양형위원회</h2>
	문의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 02-3480-1924)

양형위원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개최

■ 개요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021. 11. 8.(월) 14:00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젠더폭력 범죄를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

■ 심포지엄 일시 · 장소 · 방청 방식

- 주제 :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 일시 : 2021. 11. 8.(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중계 방식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 1세션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젠더폭력 실태]

- 성폭력 피해 관련

·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음란전화 등, 불

법촬영, 불법촬영 유포, 성기노출 등 피해) 경험률은 25.7%이며, 여성 38.6%, 남성 13.4%임. 여성은 약 2.6명 중 1명이 평생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하며, 남성은 약 7.5명 중 1명이 평생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

-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피해 건수와 범죄통계 상 발생건수의 차이는 2007년(113.3배)에 비해 2019년(18.5배)으로 올수록 많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많은 암수 범죄가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에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51.6% 증가한 가운데 어렵게 사건화된 성폭력 사건들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정도만 검사에 의해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있으며, 제1심 형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함

- 가정폭력 피해 관련

- 2019년 기준 배우자 있는 여성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경험률은 28.9%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약 3.5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또는 통제 피해를 1회 이상 경험
- 가정폭력 사건 중 50%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 불기소로 끝나거나 40%에 가까운 사건들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으나, 이 중 40% 가까이는 보호처분마저 내려지지 않고 종결되고 있음. 고작 9% 정도의 사건만이 기소되고 있으나 종국재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성매매 관련

-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전체의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7%였고, 위기청소년(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등 방문 청소년, 소년원생 등, 166명) 대상 조사결과,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임
- 성인남성(1,500명) 대상 조사 결과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한 경험 비율은 42.1%로 2016년 50.7% 대비 8.6%p 감소, 성인남녀(2,300명) 대상 조사 결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율은 88.5%로 '16년 83.9% 대비 4.6%p 증가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 2019년 1,200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인식 및 경험 관련 국민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가 스토킹을 직접 경험하였고 27%가 지인의 스토킹 사건을 통해 간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133명 중 67.1%가 '연락 없이 주거지·직장 기다림'을, 63.1%가 '지나친 전화·문자'를 경험하였으며, 그 외에 모욕, 협박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피해 유형도 각각 17.6%, 16.7%에 달함
- 데이트폭력은 2011년에 총 11,840건이 발생한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총 13,96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살인 등 강력범죄는 2년 평균 752건,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는 2년 평균 9,291건이 발생함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양형의 역할]

- 기존 양형기준에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반영

- 여전히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부과하거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범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온정적 판결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형량결정에서 양형인자가 부당하게 고려되거나 불균형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한편 법원이 판결문에 양형기준 적용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양형기

준표에 열거된 사유를 나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 그 이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관행을 기본으로 정해지는 데에 있는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양형관행에 따르기보다 피해자, 수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양형기준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의 의미 내용 강화 및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위치 재고

- 성폭력범죄는 재산범죄와 같이 피해회복이 금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 뿐더러, 현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2차 피해 등 현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자 내지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을 범해도 합의만 이루면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는 인식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감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와 데이트폭력범죄 유형에서의 양형기준 적용

-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습상해는 제1유형인 일반상해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될 뿐임. 이로 인해 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수상해·누범상해에 속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의 상습성은 다른 특별양형요인들과 함께 가감되며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보복목적 상해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4유형으로 위치하며 죄질의 불량요소가 고려되어 기본 형량부터 가중요소가 고려되어 있는바, 가정폭력범죄가 죄명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②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송인)가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성범죄 양형의 역할은 “중한 것은 중하게”여야 함. 어떠한 것이 중한 것인지는 아는 사이의 범행보다는 모르는 사람의 범행이, 초범보다는 재범이, 일반적 범행보다는 흉기·위험한 물건·2인 이상·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범행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보다는 분명히 표현된 경우의 범행이, 사후적으로 처벌불원의사나 합의가 있었던 범행보다는 처벌불원의사나 합의가 없었던 범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임
- 처벌불원은 성범죄가 개인적 범익에 관한 죄인 이상 감경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처벌불원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 피해자가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음
- 가정폭력범죄는 주취상태에서 범한 것일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일 경우, 재범(검거 횟수가 아니라 폭력 횟수와 지속성을 의미)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일 경우,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경우 등에서 더욱 가중된 처벌이 필요함

③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성적 수치심’은 1953년 형법 제정 시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로 명명했던 그 시점에 고착된 개념으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정조를 잃은’ 피해자에게 강요되었던 감정임. 지금은 정조의 틀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정숙하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유혹했다’ 등 의심과 비난의 연장선에서 유지되어오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개념임.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스며들어 왜곡된 인식을 존속·유지시키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이제 관련법과 양형인자에서 삭제되어야 함

- ‘진지한 반성’과 관련하여, 오로지 감형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단체에 후원금을 일방적으로 납부하고, 다시는 성폭력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쓰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괴롭히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있음. 진지한 반성 여부가 감경요인으로 자주 고려된다는 점을 악용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 등이 성행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사고파는 부작용도 눈 여겨 보아야 함. 반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준점은 합리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함
-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감경을 받아내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집요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함 / ‘공탁’ 관련,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한 것을 근거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유전무죄의 악습을 이어가는 것임
- ‘성폭력 2차 피해’는 가중 사유로 둘 필요가 있음. 심리적·시간적인 고충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되는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감경하는 방안도 제안함.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④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폭력 범주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성매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다기한 형태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은 그것들이 젠더 폭력으로서의 “동종”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양형 판단의 과정은 그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를 적용하여 해석하고 적정한 가해자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고 명 명하는 힘과 사회적 효과를 갖고 있음
- 내부자적 행위로 여겨졌던 판결문 작성은 오늘날 현존하는 젠더 관계 를 재/생산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발화행위로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양형 기준의 합리성을 검토 하는 과정이 '법 감정'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적 서비스나 관련 책무라 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젠더 관점의 이해와 설득, 사회정의 구성에 스스로 연루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 2세션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

- ①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 안」을 주제로 발표

[젠더폭력 특수성을 감안한 양형기준 개선점 논의의 방향 설정]

- 검토 방향

- 젠더폭력 관련 범죄 자체에 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함
 - ① 적용되는 범죄군에서 독립된 유형으로서 젠더폭력 범죄 유형 설정
 - ② 젠더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
 - ③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 ④ 새로운 법률이나 신설 조문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 의 편입

- 유형 분류의 타당성 및 새로운 유형 설정 가능성

- 교제살인 범죄에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상으로는 제2유형(보통 동기 살 인)으로 분류되나, 사안에 따라 보복살인 등 비난 동기에 가까운 경우

에는 보다 중한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유형을 정비할 필요 있음. 또한,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과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을 하나로 묶고 그 안에 세밀한 항목 분류를 설정하면서 최소한 교제살인을 독립된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방안 강구하여야 함

-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필요성

- 교제살인의 많은 사건에서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점, 살인 이전에 크고 작은 폭력행위들이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이나 공포심,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유로 신고 등 절차를 조기에 취하기 어려운 점 등 교제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개념을 보다 세심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제살인 사건 중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히 명백한 경우 이를 특별가중요소로서 무리 없이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데이트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계속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특별히 원한이 있거나 보복감정이 생길 여지를 흔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만** 정의하면 양형인자 적용에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데이트폭력은 분명히 교제하는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나쁘게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특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양형인자 개념의 정교한 수정이 요구됨

- 젠더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

- 젠더폭력 관련 판결문 양형이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신뢰관계 이용’**이나 **‘지속적 폭력 행사 및 행위태양의 위험성 증가’** 등과 같은 내용을 가중요소로서 상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미성숙한 분노, 데이트폭력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

의 둔감하고 왜곡된 태도를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판결문 양형이유가 있음. 피고인의 유년 시절의 가정불화 등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수가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교제하는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희생이 발생한 부분을 사회적 문제로 보아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법률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의 편입

-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취지 및 내용을 되새긴다면 스토킹행위로 정의되는 각 범죄들을 그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기존 양형기준에 개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 통상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1호의 각 행위들 중 몇 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스토킹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②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데이트폭력 범행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과 행동 통제 과정에서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그 개별적 폭력의 이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제하는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나쁘게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특이점이 있음. 따라서 폭력범죄의 가중요소로서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결별 요구에 대한 불만·보복, 교제 내지 만남 강요' 등을 포함시키고, 교제 관계를 포함하는 '신뢰관계의 이용', '우월적 지위의 이용'이라는 양형인자를 가중요소로 도입하여야 함
- 데이트폭력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주거지, 직장 이전 등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음. 현행 양형기준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점도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데이트폭력 범죄는 반복되고 중대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서 가중인자로 하고 있는 ‘주거침입 등 위험 동기가 추정되는 경우’,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양형인자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③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굳이 젠더폭력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 양형기준으로 젠더폭력을 포섭할 수 있는 살인범죄, 폭력범죄 등에 젠더폭력의 특수성, 즉, ‘행위 지속성·반복성, 신뢰관계 이용, 피해 정도·위험성 증가’ 요소를 양형인자로 추가한다면 젠더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법률로 젠더폭력을 규율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에 맞는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④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젠더폭력 범죄유형을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젠더폭력 개념 자체가 특정 범죄유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불평등한 성별질서의 실천속에서 발생하거나 사법적으로 다루어지는 측면을 부각하는 개념이라

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살인범죄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재 검토하고 데이트폭력과 같은 젠더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양형 인자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양형인자 개념을 수정하는 방향이 젠더폭력의 개념상 보다 적절한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됨

-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관대한 양형 태도는 주로 벌금형 선고로 나타나는데, 벌금형 등 형종의 결정 및 벌금형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젠더폭력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가 낮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형종 결정 및 벌금형 양형기준의 마련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별첨1]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출석(오프라인) 또는 접속(온라인) 확인	
14:00~14:10	식 전 행사	개회식 사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3.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1분)
14:10~15:50 [100분]	◆ 제1세션 「소주제: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 조현욱 (변호사, 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영미 (법무법인 승인 변호사)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5:20~15:35 [15분]	지 정 토 론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소주제: 젠더 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사회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젠더 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별첨2] 심포지엄 포스터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일시 2021. 11. 8.(월) 14:00~18:00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방청 온라인 생중계 (대법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 방청 시 질문이나 의견은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기관 메일
(양형위원회 sentencing@scourt.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escenter@kwidmail.re.kr)로 보내주시시오.



개회식

사회: 송영복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14:00-14:10 인사말씀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제1세션]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조현욱 변호사·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15:50 발표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김영미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5:50-16:10 휴식

[제2세션]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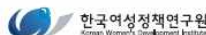
사회: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6:10-17:35 발표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토론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협회 인권이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및 폐회



YouTube <https://youtu.be/vnXY4hetVBw>



YouTube <https://youtu.be/Gs-skaccP4o>

